

# 건축행정시스템(세움터) 운영관리 위탁기관 고시 일부개정안

## 1. 개정이유

「건축법」 제82조제4항 및 시행령 제117조제5항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(세움터) 운영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기관 일원화 필요

## 2. 주요내용

국토교통부장관이 「건축법」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건축허가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을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변경\*하고, 업무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과업지시에 따르도록 규정

\* 위탁기관: (현행) 한국부동산원+건축공간연구원 → (개정) 한국부동산원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건축법·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별도 행정예고 생략

##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- 26호

「건축법」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(세움터) 운영관리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
2023년 1월 10일  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### 건축행정시스템(세움터) 운영관리 수탁기관 변경 고시

#### 1. 목적

- 건축행정시스템(세움터)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한 건축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수탁기관을 '한국부동산원', '건축공간연구원'에서 '한국부동산원'으로 변경

#### 2. 수탁기관

- 명 칭 : 한국부동산원
  - 대표자: 손 태 락
  - 주 소: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(신서동)

#### 3.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

- 위탁 업무 : 건축행정시스템(세움터) 운영관리

##### 가. 사업운영

- 운영관리 기획, 개선계획 수립.시행, 지원 등 운영관리 총괄
- 유지관리업체 선정 및 관리
- 건축정보화 사업 지원 및 홍보 지원(보도자료, 홍보계획 등)

## 나. 콜센터 운영 및 사용자 지원

- 건축신고 민원 및 콜백 서비스 전담 조직 운영
- 지자체 및 건축사 등 민원인에 대한 전화 응대
- 건축, 주택, 건축사 업무 등 시스템 운영에 대한 사용법 설명

## 다. 건축행정시스템(세움터) 유지보수

- 관련 법령 및 규정 제·개정 시 변경사항 분석 및 적용
- 사용자의 요구 등 시스템 기능 변경, 보완, 사용방법의 개선 및 적용
- DB 자료관리 및 대·내외 시스템 연계 및 협의 지원

## 라. 건축물 통계 개발 등 지원

- 건축인허가·건축물 통계 개발 및 분석방법 고도화 추진
  - 건축물 현황 분석 보고서 작성 등 데이터 분석 지원
  - 데이터 품질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 지원
  - 건축행정 정보제공 기준검토, 전산자료 제공 및 활용 지원
- 처리방법 :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과업지시에 따른다.

## 4. 수탁기간

- 수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